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- 92 호

##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
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전에 대해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12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(인)



### 1. 지정취지

공동주택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함.

2. 지정일자 : 2019. 8. 12.(월)

### 3. 금연구역 지정 내용

- 가. 명 칭 : 래미안 파크스위트 아파트
- 나.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45
- 다. 지정범위 : 계단, 복도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
### 4.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

- 가. 계도 기간 : 2019년 8월 12일 ~ 2019년 11월 11일
- 나. 과태료 부과일자 : 2019년 11월 12일부터
- 다. 과태료 부과금액 : 5만원

### 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(☎450-19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